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굿모닝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굿모닝방문요양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굿모닝방문요양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서비스범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4.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월)	구 분	금 액(월)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등급별 방문요양 수가 (25.1.1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등급	657,400

분 류	수가(원)	본인부담금 (20회서비스)		
30분이상	16,940	일반	16,940×20회×15%	50,820
		경감	16,940×20회× 9%	30,490
			16,940×20회× 6%	20,320
60분이상	24,580	일반	24,580×20회×15%	73,740
		경감	24,580×20회× 9%	44,240
			24,580×20회× 6%	29,490
90분이상	33,120	일반	33,120×30회×15%	99,360
		경감	33,120×30회× 9%	59,610
			33,120×30회× 6%	39,740
120분이상	42,160	일반	42,160×20회×15%	126,480
		경감	42,160×20회× 9%	75,880
			42,160×20회× 6%	50,590
150분이상	49,160	일반	49,160×20회×15%	147,480
		경감	49,160×20회× 9%	88,480
			49,160×20회× 6%	58,990
180분이상	55,350	일반	55,350×20회×15%	166,050
		경감	55,350×20회× 9%	99,630
			55,350×20회× 6%	66,420
210분이상	61,670	일반	61,670×20회×15%	185,010
		경감	61,670×20회× 9%	111,000
			61,670×20회× 6%	74,000
240분이상	68,030	일반	68,030×20회×15%	204,090
		경감	68,030×20회× 9%	122,450
			68,030×20회× 6%	81,630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행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

8) 계약해제 처리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